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7,319,193	18,819,576
일반회계	562,713,787	16,881,414
특별회계	64,605,406	1,938,162
공기업특별회계	53,703,203	1,611,096
상수도공기업	30,560,435	916,813
하수도공기업	23,142,768	694,283
기타특별회계	10,902,203	327,066
주택사업	3,000,894	90,0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5,700	4,071
의료급여기금운영	1,028,470	30,85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28,588	18,858
농공지구조성사업	5,217,034	156,511
기반시설	21,492	645
장기미집행	365,593	10,968
수질개선	504,432	15,1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80,9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3,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